

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홍건익가옥)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 2개소(홍건익가옥, 배림가옥)를 통합하여 사무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나, 정체성이 다르고 위치적으로도 상이한 2개소를 분리하여, 홍건익가옥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홍건익가옥) 운영지원

나. 위탁 개요

- 대상시설 : 필운동 홍건익 가옥(시 민속문화재 제 33호)
- 소재지 : 종로구 필운대로 1길 14-4(경복궁서측 지역)
- 시설규모 : 대지 740.5㎡, 연면적 154.63㎡
- 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)
- 소요예산(안) : 347백만원 ※ '20년 예산(2개소): 50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경북공서측 지역의 역사문화 아카이빙 전시 기획·운영
- 근·현대기 한옥의 변화 양상 전시 공간 체험 운영
- 지역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주민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기획·운영(대관 프로그램 등)
- 가옥 및 지역 해설 등 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

라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」 제36조
-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-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 방침('20.2.20.)

마. 필요성

- '17년 5월부터 역사가옥 2개소(홍건익가옥, 배림가옥)를 통합하여 사무위탁으로 진행했으나, 정체성이 다른 두 가옥을 동시 관리하면서, 가옥별 특성을 살린 전문적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어려워 당초 목적인 가옥의 활용도, 공공성,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
- 특히, 두 가옥의 소재지가 달라 역사가옥의 광범위한 시설 관리로 수탁기관 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빈번한 로테이션 근무 등으로 운영인력 부족, 잦은 퇴사 발생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운영기간 동안 2차례 협약해지 등 민간위탁 사업의 안정성 저해
-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분리를 통해, 홍건익가옥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한 전문단체에 개별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극대화

바. 기대효과

- 가옥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 문화, 공동체, 지역 가치를 담은 종합적, 전문적 활용 통해 역사가옥의 공공성 및 지역기여 확대
- 적극적인 시설 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통해 홍건익가옥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 만족도 제고

3. 추진일정

가. 추진현황

-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('16.12.16.)
- 역사가옥 2개소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·해지('17.5.~'19.7.)
 - 최초 위탁('17.5.1.~'20.4.30.) ※ '18.3.31.일자 협약해지
 - 1차 재위탁('18.4.1.~'21.3.31.) ※ '19.7.31.일자 협약해지
- 시의회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('19.4.22.)
-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(공모) 추진계획('19.4.29.)
- 역사가옥 2개소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('19.7.29.)
 - 2차 재위탁('19.8.1.~'20.12.31.) ※ '21년부터 분리위탁 위해 기간 조정
-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('20.2.20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0.3.24. 조직담당관)

위탁사무명	유형		위탁기간	심의결과
서울 공공한옥 (홍건익가옥) 운영지원	사무	신규(공모)	3년	적정

나. 향후계획

- 제 293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('20.4.20.~4.29.)
- 홍건익가옥 수탁기관 공모, 적격자 심의위원회('20.6월~8월)
-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, 위탁사무 인수인계('20.9월~11월)
- 홍건익가옥 신규 수탁기관 운영('21.1월~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」 제36조

제36조(시 소유 문화재 운영위탁)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문화재 보전,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, 단체 또는 자치구
2.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(名所)화할 수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자치구

② 시 소유 문화재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
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 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조직담당관 심의('20.3.24.)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: 결과(적정)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문화팀 박여은(☎ 2133-5582)